

영등포구의회  
제173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 
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

2013. 2. 28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81호로 2013년 2월 15일 김길자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따른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
다.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(안 제4조, 안 제5조)

라. 종합복지서비스 제공,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,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, 안 제7조, 안 제8조)

다.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.(안 제9조)

바. 교육 및 홍보,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(안 제10조, 안 제11조)

#### 4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자립생활 등에 필요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-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(안 제4조, 안 제5조)
- 종합복지서비스 제공, 복지단체의 보호와 육성, 복지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 ~ 안 제8조)
-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, 교육 및 홍보 실시, 사업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(안 제9조 ~ 안 제11조)

- 발달장애인은 아동기에 나타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일생동안 자립하기가 힘들고 본인 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부담이 큰 장애 유형으로서, 지적인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 또한 어려워 이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 등 피해가 발생하여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·사회적 배려나 보호체계는 충분하지 못하였음.

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10 ~ 11월 「발달장애인 실태조사」를 실시하였으며, 실태조사를 근거로 2012년 7월 발달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화된 종합지원계획인 「발달장애인 지원계획」을 수립·발표하였음.

우리구에서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과학교 운영, 일자리 제공과 동 주민센터의 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을 위한 관련 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계획수립 시 필요

다. 타 자치구 조례 현황 : 양천구, 중구, 대전광역시,  
광주광역시, 광주광역시 서구

# 관 련 법 령

## ■ 장애인복지법

**제35조(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**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11.3.30>
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**제63조(단체의 보호·육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·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# 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**제2조(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)** ① 「장애인복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"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.

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,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3.15>